

	위탁(임대·임차·위탁 등) 및 용역 관리위원회 규정	제정일	2023. 4. 1
		개정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관리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내의 위탁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, 분석 및 심의를 위한 위탁시설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 본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및 용역이라 함은 식당, 편의점, 커피숍, 서점, 음료자판기, 주차장, 통학버스 등을 말한다.

제 3조 (역할) 본 관리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의 편의를 위하여 교내에 설치 운영되는 위탁관리시설 및 용역의 안정적인 유지운영으로 구성원들의 만족도 향상 및 대학발전의 기틀을 다진다.

제 4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총장,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각 행정처장, 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제 5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및 심의한다.

1. 대학 내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전문 업체에게 임대, 임차, 위탁, 용역 등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업무 (단, 국제교류센터내의 컨벤션센터 및 스포츠센터는 제외한다)

2. 임대, 임차, 위탁, 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및 계약서 변경에 따른 심의업무

3. 효율적인 대학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정책자문

4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을 발의할 수 있다.

제 7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경우로 소집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③ 본조 2항에 의거 결정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 후 최종 확정한다.

제 8조 (사무 관장) ① 위원회의 사무는 관리과에서 관장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관리과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 9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